

##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(지하도로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(☎032-440-1724),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760-7518)에 갖추어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. 12. 11.

## 인 천 광 역 시 장

### 1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8-5번지 일원

### 2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 설 명	기능	위치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고
폐지	답동 지하도로	지하도로	중구 답동 18-5번지 일원	15,147	1996.11.2. (인고 제1996-179호)	실효

나.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실효일자	실효사유
답동 지하도로	-	2020. 7. 1.	-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에 따른 실효

3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서비스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